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화장품 유해 화학성분 검사 및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8년 1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화장품 유해 화학성분 검사 및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월    일

### 소개의견

청원인 김인후 외 18 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는 2018년 1월 제 20회 임시회의 청소년 국회를 개최하여 각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중 하나가 <화장품 유해 화학성분 검사 및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물품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한 소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음에도 화장품 회사의 재정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된 성분에 대해서도 국민 개개인이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 성분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마크를 지정하여 부착하면 국민들이 믿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는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 제4조 2항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관련 법률, ‘화장품 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사용자의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물품임에도 미흡한 법률에 대해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미흡한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사례로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한 ‘모디 퀵 드라이어’라는 제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56배에 이르는  $5663\mu\text{g}$ 을 포함했음. 아리따움의 ‘컬러래스팅’틴트와 ‘미러글로스’틴트에서는 입술염의 원인이 되는 ‘적색 202호’가 포함되어 있었음. 두 사례에서 소비자들은 미흡한 법률로 인해 유해성분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유해성분에 노출되었음. 이는 화장품 법 제1조(목적)에서 말하는 국민보건향상을 위배하므로 이에 부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청원함.

## 2. 주요골자

### 제8조의 2(화장품화학성분관리안전성인증마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작 및 포장 판매의 과정에서 유해 화학성분에 대해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화학성분에 대한 관리 및 검토를 통해 안전성이 인증된 상품에 한해 화장품화학성분관리안전성인증마크를 상품별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를 상품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위해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증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1. 단 위 경우 화장품 출시 당시 진행하였던 검사와는 별개로 화장품화학성분관리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검사를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 제8조의3 (인증 유효기간)

① 제 8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발급받는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변경된 상품은 의무적으로 화장품화학성분관리인증마크발급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상품의 유효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학성분의 검출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2항에 따른 인증연장신청을 받았을 때, 제 8조에 따른 위해 화학요소의 검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년에 한해 인증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처는 화장품화학성분관리인증마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화학성품 포함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 8조에 의거한 화장품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의 취소 및 별도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1. 유해 화장품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의 경우
2. 1의 사안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총리령으로 규정한 부정한 행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